

- (1)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육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는 지정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

다. 교육내용에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정책 신설(제5조)

- (1) 소비자 상담사례 및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시킴.

라. 교육장소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(제9조)

- (1) 영업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·우편교육, 학점이수제 등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마. 강의 내용 및 평가 등에 대한 관리 강화(제2조, 제13조)

- (1) 교육실시 평가결과서(반기별) 제출하게 하고, 보고받은 교육계획과 교육 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,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도록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개정공포

- 환경부령 제347호, 2009. 9. 4 -

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할 경우 부산물로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가 있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기준으로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고자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브롬산염은 0.01mg/L를 넘지 아니할 것(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)

※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